

2010 교회 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연말제직회
· 공동의회

100배
즐거기



일시_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 ~ 6시

장소_ 명동 청어람 소강당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주최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0 교회 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연말제직회
· 공동의회

100배
즐거기



일시_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2시 ~ 6시

장소_ 명동 청어람 소강당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주최_ 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0 교회재정세미나

회의(會議)의정석(定石)

연말제직회· 공동의회 100배 즐기기

일시: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2-6시

장소: 명동 청어람 소강당

주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행사순서

시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연자
14:00-14:05	환영과 인사	이창호 목사 (바른교회아카데미)
14:05-14:30	기조강연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14:30-15:10	Workshop 1	김경중 총무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
15:10-15:50	Workshop 2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16:00-16:40	사례발표	
16:40-17:00	기획제안	황병구 본부장 (재단법인 한빛누리)
17:00-17:15	조사발표	김애희 실장 (교회개혁실천연대)
17:15-18:00	그룹별 Q&A	

자료집 목차

취지문	03
기조강연 정성진 목사	04
Workshop 1 평화적 의사결정_ 김경중 총무	05
Workshop 2 손에 잡히는 예·결산_ 최호운 회계사	13
사례발표	20
기획제안 축제적 연말 공동의회 기획_ 황병구 본부장	23
조사발표 교단별 의사정족수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제언_ 김애희 실장	26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31
보도자료	34

취지의 글

건강한 교회는 재정운영도 투명하고 견실합니다. 이러한 건강함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와 재물과 사명에 대한 청지기적 책무성 (Accountability)입니다.

이 책무성은 근본적으로는 영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몇몇 개인에게 이 모든 것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온전함을 향해 지어져 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교회를 디자인하여 주셨고, 세상 어떤 조직이나 모임보다 더 평화롭게 소통하고 겸손하게 동역하며 용기 있게 결단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2010 교회재정세미나에서는 재정건강성의 기초가 되는 교회 내의 공동체적인 회의와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요식적인 절차에 그쳤던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회의들이 그 본모습을 되찾아 사역보고와 계획, 예·결산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물론 진정한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각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아름답게 동역하기 위한 든든한 기초를 다지도록 돕는 이번 세미나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초강연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 광성교회 담임



평화적 의사결정

김경중 총무

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



교회의 평화적 의사결정은 일반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용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방법과는 달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의사 결정은 교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교회의 제직회나 공동의회 같은 정형화된 회의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적 의사결정’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세상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 만일 의사결정이 아무런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소수의 지도자가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여 통치하는 공산 정권이나 독재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교회에서조차도 의사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사람들은 제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각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경험을 내세워 자기주장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서로 논쟁하다가 폭력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경우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에서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는 와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국면을 넘어 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역시 의사결정에 관한 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 우리는 각자 의견을 내세워 나뉠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1. 관계

건강한 교회의 의사결정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는 자연스럽게 평화, 즉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로 연결된다. 회의 참석자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분열된 상태이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기 보다는 비판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싶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자신도 방어적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신뢰 관계가 생겼을 때 가능하다.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이 있다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럴 때는 바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회의실을 떠나있게 한다거나 불일치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어떤 일에 동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관계와 감정이 깨끗한 상태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영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나 나쁜 감정이 남아 있다면 회의에서 다룰 문제와 섞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힘들어질 때는 잠시 쉬면서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갖을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공동체는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고 각기 다른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2. 일치

사람마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음성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다. 유전자도 다르고, 흥체도 다르며 지문도 다르다. 사람마다 개성과 경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것이 못 된다.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하라고 부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일치를 추구하라고 부름 받았다.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면 교회는 분열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교인 상호간의 헌신의 수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이 있고 서로 신뢰할 만하다면 가장 민감한 사안일 지라도 분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룰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신 이유는 갈등과 불일치 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일치하는 교회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 됨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는 한

꺼번에 여러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시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숭고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일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요 17)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보다는 일치된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3. 분별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원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로 거기에는 분별(discernment)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오직 두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메고 푸는(binding and loosing) 것과 관련 있다. 다시 말해 메고 푸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권한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명(시험)하는 것이다.(롬 12:2) 평화적 의사결정의 핵심은 바로 분별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체들이 민감하고 열려있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분별은 대화의 과정이다. 대화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함께 밝히는데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보다는 모두 함께 더 심오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최소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와 섞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모였다면 그것은 가장 심오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과도 같다. 분별은 평화적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이다.

성령의 채널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한다. 형제·자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는다고 할 수는 없다. 형제·자매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심사를 소중히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별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열려있어야 한다. 기도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욱 명료하게 볼 수 있으며 동기 파악도 더 잘 할 수 있다. 기도 중에 받은 어떤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위 깊게 검증되어야 한다. 때로는 금식기도도 필요하다.

4. 위임

공동체 전체가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공동체 전체의 분별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책임을 위임 받았다는 것은 공동체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는 것이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행정상의 결정은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관여할 일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 결정은 더욱 지지를 받게 된다.

5. 의사결정 방법

전원합의 원칙 그러나 소수 의견 존중

만장일치 전원합의를 원칙 하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 완전한 토론을 거친 상태라면 공동체 내의 소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이미 공동체에 충분히 들려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6. 헌신

평화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리 앞에 바로 서고 상호 간에 헌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둘 중 한 가지만 부족해도 의사결정과정은 무너지고 만다. 점검할 사항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결정 중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악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자기 자신의 생각과 프로그램을 다 정해 놓고 밀어 붙이겠다고 마음먹고 참석하는 경우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매우 조악한 발상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7. 기간

평화적 의사결정 기간은 때때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결정은 아무런 지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결정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다. 예) 노예제도를 반대한 퀘이커 교도는 자신들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1세기가 넘는 세월이 필요했다. 그러나 1776년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쳐 퀘이커 교도들이 일치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에는 노예제 폐지에 대한

다음 세계에 미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그들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너무 느리게 결정하면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극도의 보수주의만 유발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오직 진실만을 찾고자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과 성령님께 열려 있다면 변화는 더 쉽게 찾아온다.

근시적인 안목에서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분개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헌신하지 아니하고 또한 공동체의 규율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결국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너무 느리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서로 열어놓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8. 동의하지 않을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가능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지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문제가 있음을 겸손한 태도로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불일치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는 의견을 표출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각자의 심장이 뜻하는 바를 말하고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보라. 불일치 할 때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인지 아니면 단지 잘못 이해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9. 태도

어쩔 수 없이 비판을 받는 경우라면 거칠게 반대하기 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주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부드럽게 표현해야 한다. 반대표시를 거칠고 폭력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서로간의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노와 방어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을 정당화 시키려고 있다는 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10. 반대

찬성하지 않을 때는 반대 이유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대 이유를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단순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때도 있다. 공동체는 그와 같은 상황일 경우도 존중해야 하며 왜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었는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동의가 없을 때 말로써는 동의하면서도 말투나 어조를 보면 반대표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속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시이다. 공동체는 이런 경우에도 사람들의 모호한 감정이나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모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하게 도울 필요가 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의사결정과정의 일부가 아닌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공동체적인 상황보다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11. 갈등

의사결정과정에도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적 의사결정은 갈등을 잘 다루는 방법과 화해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각자의 개성과 비전, 성격 등이 너무도 달라서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 결과 회의는 논쟁으로 변한다. 갈등이 생기면 문제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 사람의 태도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그런 나의 생각/판단이 옳은지를 진단해보자. 나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안다. “하나님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편이니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해주세요!”

우리가 만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나의 기도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에 대항한 기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나의 형제·자매를 내게 복종시켜 달라는 기도인가?

12. 갈등 해결

마태복음 18:15-18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3. 직면

갈등이 생겼을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직면(대면)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솔직히 직접 말하기”(엡 4:15)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남에 대해 험담을 한다. 험담은 관계 회복을 더디게 하는 치명적 요소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만일 누가 네게 잘못했다면 잊어버려라. 만일 누가 네게 정말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실을 친구에게만 먼저 알려라. 그런 후에 목사님께 이야기 하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라...” 만일 갈등 해결 방식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눈 여겨 보지 않은 것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갈등의 당사자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라. 서로 대면하면 그렇지 않고 떨어져서 서로에 대한 상상만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대면한다고 해서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다. 서로가 대면해서 사랑으로 직접 솔직히 말하지 않는다면 대면이나 직면을 한들 갈등이나 오해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수 있다.

14. 경청

경청의 목적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상대가 말한 것을 바꾸어 말하는 (paraphrasing)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내가 정확히 알아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태도는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했다면 상대가 다시 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할 말은 줄어든다. 누가 가장 깊은 통찰력을 지녔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다.

- 1) 1단계 직면 → 경청 (Active listening)
- 2) 2단계 중재요청 → 경청 (Mediation I)
- 3) 3단계 교회요청 → 경청 (Mediation II)
- 4) 4단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김: 목적은 회복, 방법은 사랑

15. 가장 간단한 대화의 기술: I 메시지

아이 메시지의 목적은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왜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다. 아이 메시지를 배우거나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단지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않기만 하면 된다. 아이 메시지는 갈등 상황에서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 아이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일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You 메시지를 날려보아라!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상상만 해봐도 알 것이다.

- 당신, 날 정말 화나게 했어! 당신은 무례한 사람이야!
- 당신은 항상 내게 성경을 강요해!
- 당신은 회의 중에 나에게는 별로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
-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옛날 노래만 고르냐?
-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문제야!

참고문헌

평화교회는 가능한가? - KAP

Growing through Conflict

Living in Christian Community -Herald Press

손에 잡히는 예·결산



최호윤 회계사

제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 비율의 의사소통

두 눈을 깜빡이면서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무의미한 숫자들의 나열로 보이는 예·결산 서류들. 많은 성도들을 자괴감에 빠뜨리며 방관자가 되게 만드는 숫자들.

계속 이대로 해야만 하는가?

숫자는 또 다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도구이지만, 전달하는 의미가 내포된 숫자적 언어를 같이 통용되는 약속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족함이 의사소통의 단절로 만든다.

예·결산 서류는 ‘수(數)’의 형태로 표현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다.

또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용하면서 관리하라고 위탁하신 재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숫자에 담겨있는 언어적 의미를 이해할 때 예·결산서류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결실들을 나누는 도구가 되고, 교회의 사역과 정체성을 증거하는 함축적인 사역보고서가 된다.

2. 예산과 결산의 의미

공동의회에서 결산서류를 승인하는 것이 단순히 ‘결산서류가 회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잘 기록되었다는 점을 감사가 보고하고 이를 교회공동체가 승인하는 차원’에 머무르면 이는 회계적 절차에 불과하다. 기업이나 일반 단체가 감사보고를 하고, 총회에서 결산서를 승인하는 것은 위임자가 위임한 내용에 대한 수행 결과를 만족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하여 교회가 관리하는 재정은 교인들이 재정담당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것이다. 따라서 결산보고는 재정담당자와 감사가 공동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해 동안 관리한 재정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올려드리는 과정이라는 점이 본질적인 의의이다.

결산은 한 해 동안의 활동내역을 문자가 아닌 숫자의 형태로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결산서에는 한 해 동안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숫자의 형태로 녹아들어있다. 공동의회로 이루어진 교회공동체가 이를 파악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교회에 맡겨주신 재정 관리의 청지기역할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서는 다음 년도에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계획을 문자가 아닌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예산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교회 성도들이 재정담당자들이 제시한 계획을 제3자 적 입장에서 승인하는 관점이 아니라 예산서에 담겨 있는 계획들이 교회공동체 구성원인 성도 자신의 계획이고, 헌신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정하는 시간이 될 때에 재정 관리를 맡은 자로서 바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

3.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가. 다음의 결산서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와 알 수 없는 정보는?

A. 수입

주일헌금	19,037,000
감사헌금	38,561,000
십 일 조	141,818,000
절기헌금	17,324,000
선교헌금	12,591,000
구제헌금	7,842,000
합 계	237,173,000

B. 지출

예 배	6,304,000
사 례 비	73,212,000
교회학교	34,405,000
관 리 비	61,264,000
선 교 비	18,175,000
구 제 비	5,653,000
행 사 비	38,160,000
합 계	237,173,000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나. 또 다른 형태의 결산서

A. 수 입

주일헌금	19,037,000
감사헌금	38,561,000
십 일 조	141,818,000
절기헌금	17,324,000
선교헌금	12,591,000
구제헌금	7,842,000
합 계	237,173,000

B. 지 출

예 배 부	6,304,000
학 생 처	47,231,000
청 년 처	34,405,000
장년사역	32,301,000
선 교 부	22,374,000
구 제 부	27,435,000
관 리 부	67,123,000
합 계	237,173,000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4. 보충적 정보를 추가한 보고서 형식(결산서류 표시 형태별 의미파악 차이)

가. 금액만 표시하는 형식

A. 수 입

주일헌금	19,037,000
감사헌금	38,561,000
십 일 조	141,818,000
절기헌금	17,324,000
선교헌금	12,591,000
구제헌금	7,842,000
합 계	237,173,000

B. 지 출

예 배	6,304,000
사 레 비	73,212,000
교회학교	34,405,000
관 리 비	61,264,000
선 교 비	18,175,000
구 제 비	5,653,000
행 사 비	38,160,000
합 계	237,173,000

나. 상대적 비율을 같이 표시

A. 수입

주일헌금	19,037,000	8%
감사헌금	38,561,000	16%
십 일 조	141,818,000	60%
절기헌금	17,324,000	7%
선교헌금	12,591,000	5%
구제헌금	7,842,000	3%
합 계	237,173,000	

B. 지출

예 배	6,304,000	3%
사 례 비	73,212,000	31%
교회학교	34,405,000	15%
관 리 비	61,264,000	26%
선 교 비	18,175,000	8%
구 제 비	5,653,000	2%
행 사 비	38,160,000	16%
합 계	237,173,000	

다.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비교 표시

항 목	당기	
	금액	비중

전년도		증감율
금액	비중	

수입

주일헌금	19,037,000	8%
감사헌금	38,561,000	16%
십 일 조	141,818,000	60%
절기헌금	17,324,000	7%
선교헌금	12,591,000	5%
구제헌금	7,842,000	3%
합 계	237,173,000	

16,324,000	8%	17%
37,276,000	18%	3%
121,923,000	58%	16%
15,362,000	7%	13%
11,121,000	5%	13%
6,734,000	3%	16%
208,740,000		14%

지출

예 배	6,304,000	3%
사 례 비	73,212,000	31%
교회학교	34,405,000	15%
관 리 비	61,264,000	26%
선 교 비	18,175,000	8%
구 제 비	5,653,000	2%
행 사 비	38,160,000	16%
합 계	237,173,000	

5,923,000	3%	6%
69,230,000	33%	6%
27,238,000	13%	26%
57,350,000	27%	7%
12,378,000	6%	47%
2,232,000	1%	153%
34,389,000	16%	11%
208,740,000		14%

5. 예·결산서 작성기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일 년간의 재정처리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일정한 원칙으로 분류하여, 꿰어야 재정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예·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눈에 교회의 방향성과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작성된 서류를 보는 사람은 먼저 숲을 보는 관점에서 교회의 재정적 흐름을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금액을 항목별로 나열하기보다는 예·결산서 이용자가 한눈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 구분 기준으로 요약한 요약표, 각 항목별 비중을 비교한 비율, 전년도와 비교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결산서 검토 시 작년에 계획하였던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 대비 증감액을 비교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새해 계획(예산)수립 시 동일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6. 예·결산 참여 팁

가. 숲을 보는 정보 파악

목회계획과의 일치

서술형으로 표현한 목회 계획과 숫자로 표현한 예산서의 방향과 중요성 등이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전체대비 비중의 균형감

개별 항목의 금액적 규모보다 전체 예산 대비 항목별 비중을 비교하면서 전체적 방향성과 중요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전년도 대비 증감

전년도 발생(실행)액과 증감액과 증감 비율을 비교하면서 재정관리의 추이변화를 주목하여 본다.

예산대비 차이 분석

결산서 검토 시 예산 대비 실제 집행액의 증(감)차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정여부에 대하여 고민한다.

예비비 비중

예산 수립 시 미확정 항목에 대한 유보금액으로 표시하는 예비비의 비중의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적정한지 검토한다.

또한, 예비비 계정이 결산 항목으로 표시된 경우 예비비가 본 항목으로 전용된 내역(예비비 사용내역)을 같이 검토한다.

총괄계정 및 모호한 계정

예·결산서 계정과목에서 총괄적 합계 개념의 계정이 사용된 경우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같이 검토한다. 또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거나 혼동되는 모호한 성격의 계정에 대하여서는 작성자에게 그 분류의 기준과 성격에 대하여 질문하여 확인한다.

기금회계 분리처리의 상관성

특별회계로 분리된 회계단위가 있는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내부 간 거래를 제외한 통합 예·결산서를 같이 검토한다.

정액(定額)결산금액

결산항목에서 사례비 등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금액 단위가 만원 이상의 일정액 단위로 집행된 항목의 성격에 대하여 검토한다.

계정별 상관성 검토

사례비와 사회보험료가 일정한 비율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항목의 경우 서로 간 상관 비율관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나. 나무를 보는 정보 파악

예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항목별예산’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항목별예산 및 결산서에서 주의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선교, 장학, 구제, 예배 등 교회의 본질적 성격의 활동비로 지출하는 경우 그것이 본질적인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엄숙히 물어 보아야 한다)

- 장학금: 특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학비를 지원한다면 본질적 의미의 장학금이 아니다. 지출액이 장학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서는 미리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대상이 될 때이다. 특정 직분자의 자녀에게만 학비를 대주거나 사역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불하는 것은 해당자에 대한 사례비이다.
- 예배비(주일 식당운영비): 주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식당 운영비를 예배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떡을 떼는 교제로 의미가 있으나 성가대원, 교사 등 특정 봉사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예배비로 분류할 수 없다.

● 구제비: 구제비 지급 대상을 반드시 교회 외부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만 구제비가 전액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지급되는지 불특정 외부인에게도 구제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례비: 사역자들에 대한 사례비는 사례비로 집합적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담임교역자 사례비는 예배비, 교회학교 담당 사역자는 교육비, 정액 활동 보조비는 목회활동비, 교역자 자녀 학비 지원금은 장학금 등 다양한 성격의 계정으로 분산시켜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 전도비: 새신자과정 개설비용은 전도비라고 하기보다는 교육비 성격이다. 외부에 복음을 전하는데 발생하는 지출이 전도비로 분류되어야 한다.

7. 예·결산 공동의회에서 바람직한 정보파악 및 공유

중소규모 교회에선 재정담당자가 재정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결산서를 만들게 된다. 본인은 고민 고민하면서 작성한 서류를 난도질하면서 공격과 방어의 개념으로 예·결산회의를 진행하면 교회 공동체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 상처만 남게 된다. 또한 너무 앞서가면 혼자 잘난체한다는 핀잔 아닌 핀잔으로 왕따 당하기 쉽다.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게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인가가 틀렸다, 잘못되었다는 표현보다는 의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방식의 표현

예·결산 서류는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적 정리이다.

몇 일, 몇 주에 걸친 작업 결과물을 예·결산서를 접한 지 몇 분 만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정말 모를 수도 있고, 본인이 알지 못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틀렸다는 결론으로부터 시작하면 서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담과 함께 때로는 인간에 대한 상처로 남기도 한다. 본인은 이러 이러하게 생각하는데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러 이러한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생각을 표현하면 회의가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과정이 된다.

본인이 파악한 정보를 요약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정보를 공유

예·결산 서류의 숨겨진 의미를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특이사항을 발견하였다면 남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먼저 하기보다 본인이 파악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파악한 내용이 맞는지 작성자에게 확인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면서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한 후에 본질적 접근을 하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사례발표 1_ 너머서교회

저희 너머서교회는 회의의 정석을 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작은 교회로서 잘 해보려고 시도하는 교회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건강한 회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머서교회는 2008년 3월 30일에 개척한 교회로서 일산 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50여명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회의를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안들을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공동회의(교인총회)는 모든 교인들이 참석합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의회는 어린이들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교인으로서 나이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참석 합니다. 그 대신 의결권은 18세 이상으로 교회의 비전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참석해서 발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의회는 어린이들이 참석해서 교회의 재정과 중요한 안건들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참석하게 될 때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십일조와 선교헌금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의 필요한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에서 그들만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인들간의 호칭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이가 호칭을 ‘인디언식 호칭’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대나무, 작은 들풀” 같은 이름을 각자 지어서 서로 부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어른, 직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의 목적에도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에는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린이들이라고 소외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하는 회의가 더욱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는 더욱 이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체 회의에 앞서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의견 조율을 합니다.

공동의회(교인총회)를 앞두고 잠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오늘 다룰 주제를 제시하고 소그룹에서 한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전체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소그룹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님

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을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의견 조율을 가지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그룹별로 이야기 나눈 다음 각 소그룹의 의견을 발표하고 전체 의견을 조율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3. 전체회의에서 각 부분별로 보고하게 합니다.

운영위원회(당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도 각 담당자가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듣고 최종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은사에 따른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도 담당자가 나와서 사업보고와 계획을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역의 중심이 명확해지고 담당자도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모일 때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담당자가 참석해서 제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자들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해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중간 단계를 최소화 하고 그들의 의도를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의의 정석은 멋진 회의의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유기체로서 교회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임성도 가지게 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 몸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의식을 가질 때 더욱 회의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례발표 2_ 별지 첨부

축제적 연말 공동의회 기획



황병구 본부장

한빛누리 재단

■ 즐거운 상상

1. QT 나눔으로 시작하고 중보기도회로 마무리하는 당회
2. 각부 사역보고가 주를 이루고 생일 맞은 제직의 축하순서로 맺는 월례 제직회
3. 교육부서 졸업식과 발표회, 제자훈련과정 수료식, 각종 시상식을 겸한 공동 의회

■ 엄연한 현실

1. 가장 많은 수, 가장 짧은 시간이라는 조건
2. 예배는 예배, 회의는 회의, 행사는 행사라는 기존인식
3. 소는 누가 키우나? 재정보고와 현안협의만 해도 할 일이 태산인데

■ 발상의 전환

1. 재정 예결산 등 회의자료는 사전에 공유하고 주요질의와 의견은 서면으로
2. 회의를 여러 주에 걸쳐서 안건별로 진행하기: 정회와 속회를 통한 운영의 묘
3. 사역부서별, 교구별, 자치회별 총회에서 주요 안건을 미리 다루기

■ 축제적 회의를 위한 기초

1. 감사와 거룩한 기대감
2. 재정결산과 동시에 사역결산이라는 의식
3. 예전적 적용 역량의 축적
4. 당회와 감사인과 예결산위원회와 제직회의 섬김 의식

■ 축제적 연말 공동의회를 겸한 특별예배의 일례

개요

총 소요시간 120분

약 250명 규모의 중소형 교회,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공동의회

12월 성탄주일 오후 3시경 찬양예배 환경

올해의 마지막 성찬을 겸하는 자리

1부_ 하나님께로 나아감

입례(03분): 교역자, 사역부서장, 교회직원, 교구장, 구역장(순장, 목자), 기관장 등

찬양(10분): 세대별 연합 찬양팀의 찬양인도, 또는 연합성가대의 찬양

기도(04분): 교독식으로 마련된 인도자와 회중의 감사기도, 공동의회를 함께 선언

말씀(10분): 올해의 주제 말씀으로 연초에 전했다 말씀 요약 재선포

봉헌(03분): 회중찬송 중 각종 회의록, 부서별 사역/재정보고서, 올해의 세례명단을 봉헌

2부_ 돌아봄

기억(05분): 올해의 연간 주요사역을 사진 슬라이드쇼 또는 영상으로 소개

간증(05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부서에서 회심자 또는 헌신자의 간증

경축(05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육부서에서 마련한 특별순서

결산(15분): 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 및 전임 재정부서장의 결산보고 및 인준

3부_ 내다봄

기대(05분): 새해의 연간 주제말씀과 주요사역, 조직개편 등을 도표와 사진 등으로 발표

임명(05분): 새로운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정면에 도열하여 축하를 받는 시간

예산(15분): 신임 재정부서장의 예산보고 및 최종 조정과 인준

기도(05분): 새해의 예산과 사역계획, 새로운 일꾼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

4부_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감

성찬(12분): 올해의 세례교인들이 성찬위원들을 보조

결단(06분): 준비된 서식에 각자 새해의 전도대상, 봉사영역, 훈련코스 등을 적어 제출

폐회(10분): 폐회선언 후 참석한 이들이 연합의 찬송을 부르며 전원이 돌아가며 악수례

축도(02분): 담임목사 또는 공동의 축복기도

** 순서를 모두 마친 후 다과 또는 만찬을 나누는 옵션도 추천

■ 즐거운 상상의 확장

1.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축제적으로 기획하기
2. 각 기관 및 부서 총회를 축제적으로 기획하기
3. 지역 노회와 교단 총회를 축제적으로 기획하기
4. 선교대회와 신학학술회의를 축제적으로 기획하기
Cf. 로잔세계선교대회와 WCC세계총회에서 배우기

교단별 의사정족수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제언



김애희 실장
교회개혁실천연대

각 교단 헌법상 공동의회관련 조항 개요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장
명 칭	공동의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공동의회
정 의	없음	없음	없음	교인의 총회
회원 자격	무흠 입교인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	무흠 입교인	무흠 입교인
소집 시기	-	-	1년 1번	-
소집 요건	1)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 2)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	1)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2)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4)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5)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 결의 없이 소집가능)	임시회의 경우 1) 제직회의 청원 2)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 3) 상회의 지시	1)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임 원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회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공 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시일, 장소, 안건을 1주일 전 공고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1주일 이전에 공고

<p>개회 성수</p>	<p>출석한 수(단,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p>	<p>회집된 회원 수</p>	<p>회집한 회원 수 (단, 수가 너무 적으면 시일을 다시 정하여 회집할 수 있다)</p>	<p>회집된 회원 수</p>
<p>직무(안건)</p>	<p>1) 당회의 경과상황 청취 2)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 3)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 채용 4)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 의결</p>	<p>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p>	<p>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4) 직원의 선거 5) 상회 지시사항</p>	<p>1) 당회가 부의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채용 3) 직원 선거 4)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5) 재산 취득 및 처분</p>
<p>의결정족수</p>	<p>1) 일반의결은 과반수 2) 목사 청빙 투표 시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 3)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p>	<p>재석 과반수 (단,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제외)</p>	<p>다수결(단, 명시한 사항 제외)</p>	<p>과반수(단, 직원 선거 등 명시된 사항 제외)</p>
<p>회의록 보관 의무</p>	<p>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p>	<p>없음</p>	<p>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p>	<p>없음</p>

	감리교	성결교	기하성
명 칭	당회	사무총회	공동의회
정 의	개체교회에 등록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	없음
회원 자격	1)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2)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정회원	침례받은 만 20세 이상된 자
소집 시기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	매년 말경(정기총회)	매년 1차 소집
소집 요건	임시당회의 경우 1) 담임자가 필요할 때 2) 당회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 경우 1) 지교회가 필요할 때 2)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임시회의 경우 1) 당회나 제직회의 결의 2) 회원 1/3 이상 요청 3) 상회의 요청 시
임 원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되고, 당회 서기 1인은 정기당회에서 선출한다.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되, 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공 고	담임자가 정하되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일시와 장소를 공고	1) 정기회의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전 대예배시에 공고 2) 임시회의는 1주일전에 대예배시에 공고	담임목사가 2주일 전에 후보나 공식예배시 공고
개회 성수	출석 회원 수	1) 정기회의는 과반수 이상 출석 2)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 1이상 출석	출석 회원으로 성수
직무(안건)	1)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2) 모든 임원의 보고(교역자 포함) 받는다. 3) 집사, 권사 선출 4) 감사, 교회학교장 등 선출한다. 5)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6) 속회를 조직하고 속장을 선출한다. 7)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천거한다. 8)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1) 당회 또는 직원회로부터 연간 인사보고와 사업 및 재산목록, 회계 결산보고를 받는다. 2) 지교회 각 기관의 경과보고를 받는다. 3) 교역자와 장로의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며 당회 또는 치리목사가 선출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반직원을 임명 공포한다. 4) 당회나 치리목사가 제출한 신년도 사업계획안을 인준하고 예산안을 협찬하며 당회가 조직되지않은 교회는 예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협찬한다. 5) 교회재산의 조성과정, 관리사항	1) 1년동안의 교회 교세보고, 예산 및 결산을 인준한다. 2)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투표로 하되,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3) 교회 이전 및 병합 결의는 재적 교인의 2/3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담임목사 청빙을 인준한다.

	<p>의결한다9)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0)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p> <p>11)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p> <p>12) 신천집사, 신천권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증서 수여한다.</p>	<p>등의 보고를 받고, 처리를 승인한다.</p>	
의결정족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p>1) 정기회의는 재석 과반수 찬성</p> <p>2) 임시회의는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p>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
회의록 보관 의무	<p>1)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제15조 당회 서기의 직무 중)</p>	<p>1) 교회재산 조성과정과 재정현황 및 인사관리 상황에 관한 정기 사무총회 회의록 및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은 사무총회 종결 후 즉시 작성하여 매년 지방회 개최일 이전까지 지방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지방회의 확인을 받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p>	없음
기 타	<p>사무처리 순서 기재</p> <p>1) 개회예배</p> <p>2) 서기선택</p> <p>3) 회원점명</p> <p>4)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p> <p>5)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p> <p>6) 담임자 신년도 계획안 보고</p> <p>7) 교회임원 선출</p> <p>8) 신천집사, 신천권사 증서 수여</p> <p>9) 그 밖의 사무처리</p> <p>10) 폐회</p>		<p>제직회로 대체가능</p> <p>침례받은 성도 500명 이상이며, 제직회원 100명 이상된 교회는 제직회가 공동의회를 대행할 수 도 있다.</p>

제언

1. 의결 정족수의 명료화

- 회의에 대한 성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허나 교회 규모가 클수록, 회의성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의결정족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가능한 명문화된 토론과정을 통해, 의결정족에 관한 원칙을 합의할 수 있다.

2. 회의안건과 장소에 대한 선행공고 및 문서배포는 필수적이다.

- 출석인원만으로 회의를 구성하고 회의의 안건과 장소에 대해 선행 공고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다면,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중요한 의사결정은 교인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또 그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교인들은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소개 ■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한빛누리가 공동으로 구성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교회재정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소개 ■

한 집단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집단의 재정적 건강성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의 불신의 목소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신감의 이면에는 **교회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이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교회재정사용의 불투명성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칙 없이 현금을 걷고, 모인 재정을 합당한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사후보고와 감사마저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가 진리의 터전답게 깨끗하고 건강한 원칙을 갖춘 재정원칙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믿음의 공동체 이름으로 책임지고, 공동체가 엄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보급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제시하고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한 부서의 개인이나 개별교회의 건강함을 넘어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전체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자정운동을 모색해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결성하여, 건강한 교회재정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cfnet.kr

이메일_protest2002@netffice.com

활동연혁 ■

2005년	8월 18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가 연대하여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활동시작
2006년	4월 10일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회 개최 (기윤실 주관)
	4월 26일	성경적 재정원칙 세미나 (기윤실 주관)
	8월 10일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2월 1일	바른 재정 세미나 (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7년	5월 11~12일	교회개혁 희망네트워크 전국포럼 개최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8일	교회재정운영 규정 발표 기자회견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8일	투명한 재정이 교회를 살린다 세미나 (바른교회아카데미 주관)
2008년		(재)한빛누리 단체 참여
	4월 22일	교회재정운영 규정에 관한 공청회 (기윤실 주관)
	6월 26일	목회자 납세 설명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0월 20일	목회자 납세 설명회 “대구” (교회개혁실천연대 주관)
	11월 27일	교회 재정 세미나 “감사의 정석”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주관)
2009년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단체명을 “교회재정건강성운동”으로 변경
	11월 13일	교회 재정 세미나 “예산의 정석”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 주관)
2010년	11월 11일	교회 재정 세미나 “회의의 정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관)

교회재정건강성운동과 함께하는 단체들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병들어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로 소망하며, 2002년 11월에 창립된 기독교시민운동단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내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 대안을 연구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일(구조개혁운동), 교회상당과 이에 따른 개 교회 및 교계 현안에 대응하는 일(현안대처운동), 성도 안에 자리잡은 왜곡된 가치관과 의식을 성경적인 틀로 교육하는 일과 개인교회들 간의 네트워크(협력지원운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소_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4-1번지 307호
전화_02-741-2793 팩스_02-741-2794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이메일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_02-794-6200 팩스_02-790-8585
홈페이지_www.cemk.org 이메일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는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2004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강좌와 세미나, 교회재정투명성 세미나, 교회신뢰지표 개발, 신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바른교회아카데미
전화_02-777-1333 팩스_02-319-1103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이메일_gcacademy@hanmail.net

한빛누리 재단은 이 땅의 변혁가들을 함께 세워가는 전략발전소입니다.

(재)한빛누리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선교 재단으로서, 기독교인들의 변화와 각성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하려는 전략적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공익적이고 신뢰받는 사업을 전개하도록 전문가의 자문과 공신력 있는 운영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소_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서광빌딩 305호
전화_02-924-0240 팩스_02-924-0243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이메일_thebrightfd@gmail.com

연말 제직회·공동의회 100배 즐기기

2010 교회재정세미나 “회의의 정석”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2~6시 / 청어람 소강당(중구 남산동, 명동역 3번출구)

건강한 교회재정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2005년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재단이 결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2008년 감사의 정석, 2009년 예산의 정석에 이은 “회의의 정석”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교회법 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 제직회(직분을 맡은 자들로 구성)와 공동의회(보통 세례교인이면 모두 참여)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 한해 사업보고와 계획, 예결산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진지한 논의와 진정한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 교회 내의 공동체적인 회의와 진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 발제와 사례발표로 구성된다.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정성진 담임목사의 기초발제에 이어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의 김경중 총무와 제일회계법인 최호운 회계사의 워크숍, 다같이 참여하는 공동의회가 되기 위한 사례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비는 1만원이며, 문의는 바른교회아카데미로 하면 된다.(02-777-1333)

- 주제 : 2010 교회재정세미나 “회의의 정석” - 연말 제직회 · 공동의회 100배 즐기기
- 일시 : 2010년 11월 11일(목) 오후 2~6시
- 장소 : 청어람 소강당(중구 남산동, 명동역 3번출구)
-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한빛누리재단)
- 프로그램
 - 기초 강연 :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 워크숍① 평화적 의사결정 : 김경중 총무(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
 - 워크숍② 손에 잡히는 예결산 : 최호운 회계사(제일회계법인)
 - 사례발표① 예결산 목회사역 보고 및 계획서 작성 : 교회 섭외 중
 - 사례발표② 축제적 연말 공동의회 기획 :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재단)
 - 조사발표 : 한국교회 의사정족수 규정에 관한 현황 분석 및 제언
 - 그룹별 Q&A
- 문의 : 바른교회아카데미 02-777-1333, 기윤실 02-794-6200

*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교단에 따라 제직회는 사역자회의, 직원회, 임원회 등으로 공동의회는 사무총회, 당회 등으로 불립니다.